

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2011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1. 6. 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○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, 지역 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**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**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축제의 명칭, 주관 및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.

○ 축제의 명칭 : **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**

○ 축제 주관 및 개최시기 : 축제는 **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** 주관으로 매년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함

나.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의 수립, 축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조사·연구, 축제행사의 진행, 축제의 평가 및 결산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**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**의 구성과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).

다.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축제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본예산 반영(350,000천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(2011. 3. 28. ~ 4. 16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, 지역 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녹색공간”이란 거창의 넓은 들과 산 등 싱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지역 농산물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.

제3조(축제의 명칭)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축제의 명칭은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4조(축제 주관 및 개최시기) 축제는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,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2장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

제5조(설치 및 기능)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공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
2. 축제의 세부추진계획의 수립
3. 축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축제의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4. 축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
5. 축제의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축제와 관련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, 농업·문화관광·예술·사회관련 유관기관·단체의 장이나 지역발전 및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장기출타,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·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축제감독) 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축제감독을 둘 수 있다.

② 축제감독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.

③ 축제감독은 축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, 연출, 진행 등을 총괄한다.

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·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총괄 분과위원회 : 축제의 전체 기획 및 홍보, 회의, 회계, 서류의 정리 및 보관,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
 2. 행사 분과위원회 : 전야제, 개회식, 폐회식, 각종 공연의 추진
 3. 전시 분과위원회 : 주제관 조성, 농특산물 전시, 판매코너 운영
 4. 체험 분과위원회 :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지원, 음식코너 운영
 5. 자원봉사 분과위원회 : 축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14조(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·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축제 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축제 지원 및 평가

제18조(경비의 지원) 군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평가 및 결산)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축제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그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, 최종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10219호, 2010. 3.31, 타법개정]
행정안전부(자치제도과), 02- 2100- 3753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9.4.1]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11. 1. 1] [대통령령 제22395호, 2010. 9.20, 타법개정]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9.8.13]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.8.13]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9.8.13]

자치법규 제·개정 유의사항 알림(2)

Ⅲ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0조의3 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
- 요 지 : 자문기관(위원회)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,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
- 내 용 :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 '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'란,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나 업무의 특성상 자문기관이 필수적인 경우 등 이고,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부칙이나 본문에 규정토록 함.